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60
----------	-----

발의연월일 : 2025년 3월 28일

발의자 :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박영섭,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인순, 임현주, 정기혁,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20~29세대 공동주택과 사용승인일로부터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등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소규모·노후 공동주택이 지원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바, 지원 제외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원 제외대상 기준을 완화함 (안 제5조제1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공원녹지과

라. 입법예고 : 2025. 4. 3. ~ 2025. 4.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만,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4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지원범위)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주택, 노유 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 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 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생략) 2. <u>20세대 이상 공동주택</u> 3. (생략) ②·③ (생략)	제5조(지원범위)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u>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만,</u> <u>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u> <u>「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u> <u>용승인을 받은 후 40년이 경</u> <u>과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u>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